

# 2026년도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지급 신청 공고

[2025년 폐기물 반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]

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주민지원기금 보상금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6. 18.



## 1. 지원개요

- 지원목적 :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
- 지원범위 :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'24. 12. 31.까지 전입되어 25. 1. 1부로 협의체 보상지정이 완료된 실거주 가구
  -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: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(전주시 고시 제2005-539호)
  - 「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·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부칙<개정 2025.3.7. 조례 제4243호> 제2조(경과조치)에 의거 조례 개정 전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 받은 가구
- 지원방법 : 가구별 현금 지원

## 2. 지원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년 6월 18일 ~ 6월 24일까지

○ 신청대상

1) [기존대상자]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보상자

2) [신규대상자] '24. 1. 1. ~ 12. 31.까지 주변영향지역에 전입신고 후 협의체 보상지정완료 실거주 가구

○ 접수처

-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, 마을회관 또는 전주시청 자원순환과

※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또는 마을회관, 자원순환과 중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
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전자우편(E-mail) 접수

- 전자우편 발송 후 유선 확인 요청 : geun0903@korea.kr / ☎ 063-281-8451

○ 제출서류

- 기존대상자 : [서식2]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※ 전년도 주민지원기금 지급 통장이 변경된 경우 통장 사본 함께 제출

- 신규대상자 : [서식1] 주민지원기금 지원 신청서 / [서식2]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/

신분증 사본 / 통장사본 / [서식3] 위임장(대리신청서)

※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원칙(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작성, 동일주소지 내 가구별 1세대 신청)

○ 문의사항 연락처

- 보상자 지정 관련 문의 :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063-236-6333

-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: 전주시청 자원순환과 063-281-8451

### 3. 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

1) 대상자 선정방법

- 주민지원협의체 자체 의결을 통해 대상자(세대주)로 지정된 후, 지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조회 등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

- 1년 이상 실거주한 자 중 누락자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별도 협의 결정

-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

## 2) 기금 지급기준

구 분	지급 비율		
소 각 장	〈~2021년 보상지정자〉	〈2022년 이후 보상지정자〉	〈2025년 이후 보상지정자〉
	1년이상 ~ 3년미만 50% 3년이상 ~ 5년미만 70% 5년미만 ~ 100%	1년이상 ~ 2년미만 : 20% 2년이상 ~ 3년미만 : 40% 3년이상 ~ 4년미만 : 60% 4년이상 ~ 5년미만 : 80% 5년 이상 : 100%	1년이상 ~ 2년미만 : 10% 2년이상 ~ 3년미만 : 20% 3년이상 ~ 4년미만 : 30% 4년이상 ~ 5년미만 : 40% 5년 이상 : 50% ·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주민으로 제한, · 50% 상한지급
세입자 : 보상금의 50%			

### 3) 지급방법 : 신청자 계좌 입금

### 4) 지원제외
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1년 미만 거주자(2025. 1. 1. 이후 전입신고자)
- 실거주 조사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것이 확인된 가구
- 거주목적이 아닌 공공시설(병원, 학교, 요양원 등), 사업체(법인 및 개인사업체 등) 사업활동에 참여하거나, 세컨하우스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된 주택 외에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가구
- 기타 관련법이나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구

## 4. 기타 및 유의사항

- 기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민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송이 진행될 경우,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송당사자에 대한 기금 지급을 보류하며, 지급금액 확정시 확정된 금액 지급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지원기금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,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

- 붙임 1.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보상금 지원 신청서 1부.  
2.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1부.  
3. 위임장 1부. 끝.





【서식 3】

# 위 임 장

## 수 임 자

성 명 : (인)

주 소 :

생 년 월 일 :

연 락 처 :

## 위 임 자

성 명 : (인)

주 소 :

생 년 월 일 :

연 락 처 :

상기 위임자\_\_\_\_\_는(은) 수임자\_\_\_\_\_를(을) 대리인으로 정하고  
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보상금 지원 신청에 관하여  
서류 작성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수임자 (서명 또는 인)

위임자 (서명 또는 인)

## 전 주 시 장 귀하

첨부서류

수임자,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.